

투자설명서 정정대비표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2022.04.21

1. 변경대상 : 멀티에셋신종 MMF 투자신탁제 N-101 호

2. 변경사유

-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시행)
- 2)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3. 변경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생략〉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생략〉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대상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금융기관 에의 예 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⑨ ~ ⑩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채무증권 (양도성 예 금증서, 어 음 및 채무 증서 포함)	〈생략〉	채무증권 (양도성 예 금증서, 어 음 및 채무 증서 포함)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투자대상 종류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가중평균 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⑧가중평균 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행위(단, 장부가평가 시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⑨ ~ ⑬ <생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운용 및 투자 제한의 예외	<생략>	운용 및 투자 제한의 예외	<현행과 같음>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 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시가평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p>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p> <p>집합투자 증권</p>	<p>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 시가평가 사유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6)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 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단기대출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 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 인 금융기관일 것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 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p>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 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 채 <p>〈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생략〉</p> <p>〈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현행과 같음〉</p>
--	--	--

끝.